

군포도시공사 제4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정관」 일부개정정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2년 5월 3일

군포도시공사 정관 제7호

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

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군포시청 부설주차장 관리·운영사업

부 칙

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미 래 기 획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미 래 기 획 부 장 박 인 희
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양 수 (3 9 0 - 7 6 1 4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사업) ① (생 략)	제6조(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신 설>	6. <u>군포시청 부설주차장 관리·운영사업</u>
7. ~ 11. (생 략)	7. ~ 11. (현행과 같음)